

노인인권보호

◆ 노인인권보호

노인복지시설(이하 시설)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1.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
-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키지 않는다.
-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.
- ③ 어르신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, 감금, 방해, 강압,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, 가혹행위, 유기, 방임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, 학대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한다.
- ⑤ 가족은 면회와 연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,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협조한다.
-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상담과 조치를 적극 취하며, 권리 침해 우려나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.

2.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
-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능력 및 자립능력을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정기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·선호·기능 상태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
- ③ 개인 선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한다.
- ④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지 않는다.
- ⑤ 시설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.
- ⑥ 이용료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으며, 이용료 문제 해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원·퇴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⑦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어르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.

3.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-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.
- ② 가능하면 개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.
- ③ 목욕, 의복,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-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.
-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.

4.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
-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,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,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

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.

5.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-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,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.
- ② 동의 없이 질병·치료·가족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.
단,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목적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.

6.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-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와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.

7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-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며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며 특정 종교 강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을 존중한다.

8.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
- ① 어르신은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최대한 존중받으며 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재산 관리 능력이 없고 본인 또는 가족·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시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정 사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.

9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- ① 어르신의 의견과 불평을 접수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.
- ② 제기된 불평을 신속히 해결한다.
- ③ 불평 제기를 이유로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10. 시설 내·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
- ① 어르신의 자발적 모임 및 교류 활동을 보장한다.
- ②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내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.
- ③ 시설 외부의 건강·사회·법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필요 시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다.
-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지 않는다.
- ⑤ 어르신의 외출과 외박을 최대한 보장한다.
- ⑥ 지역사회는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대 관계 증진에 노력한다.

11.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-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·퇴소를 하지 않는다.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.
- ② 어르신이 요청하면 건강·치료·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의식주·의료·여가 등 삶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- ④ 건강 변화·서비스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내하며,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과 가족을 참여시킨다.
- ⑤ 시설의 규칙과 입퇴소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충분히 안내한다.

◆ 노인학대

○ 노인학대의 정의 (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)

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, 경제적 착취, 가혹행위, 유기, 방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○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

시설은 학대 의심 사례 또는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. 또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개입에 협조한다.
-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호조치를 한다.
-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
-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.

○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

-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.
- 닦음, 욕설 등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.
-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.
- 금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·탈수 상태가 나타난다.
-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노인을 시설에 맡긴 후 가족이 연락을 두절한다.

◆ 노인학대 유형

노인학대의 유형 (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와 제 39 조의 9 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)

학대 유형	내용
신체적 학대	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정서적 학대	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성적 학대	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경제적 학대	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방임	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유기	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◆ 노인학대예방

- ① 노인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지도·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.
- ②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

한다.

- ③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-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·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조치한다.
- ⑤ 종사자는 노인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.
- ⑥ 치료·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.
- ⑦ 종사자는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·무시·조롱·욕설하지 않으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.
-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⑨ 종사자는 목욕·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.
-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◆ 노인학대 대응방법

-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조기 발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
- 시설은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.
-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·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학대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한다.
-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혹은 수급자에 의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, 노인이 학대 징후를 보이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·수사기관·129 상담센터·지자체 노인복지 담당부서 등에 신고한다.
- 학대 위험 상황 또는 학대 피해 노인은 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·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.
- 생활노인이 다른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이나 피해를 목격할 경우 시설·전문기관·수사기관에 신고한다.
-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자는 시설 학대의심 사례를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.
- 신고를 접수한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한다.
- 응급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학대 사례(계속되는 폭행, 심각한 상처, 영양실조, 방임 등)는 즉시 안전조치 및 보호조치를 시행한다.

○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(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)

-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·성희롱 등의 행위
- ③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
-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
-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○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, 노인복지법 제 61 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